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사후규제 토론문

최성진 /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인터넷 산업의 특성과 경쟁환경

• 네트워크 체증의 법칙

- 네트워크 규모(가입자 수)에 따라 가치 집중화 현상
- 네트워크 규모가 확대될수록 가치가 증대
- 서비스/컨텐츠 별로 1위 서비스 또는 소수 서비스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The Winner-Take-All)
-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 0에 가까움
 - '양면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전환에 따른 기회비용이 제로에 가까움
 - 따라서, 신규서비스 또는 경쟁서비스로 이동이 자유로움
- "영원한 1등은 없다"
 - 진입장벽이 없고 기술혁신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많은 이용자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음

인터넷 산업의 특성과 경쟁환경

- 인터넷(산업)의 특성
 - 개방성(Openness)
 - 표준화(Standardization)
 - 세계화(Globalization)
 - 보편성(Universality)
- 인터넷의 태생적 특성이 산업생태계 형성의 원동력
 - 수많은 기업의 시장참여를 유도하여 성공과 실패를 통해 기술 및 서비스 혁신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거대한 규모의 산업생태계를 형성

인터넷 산업의 특성과 경쟁환경

• 인터넷 산업의 기본 프레임

- Network
- Device
- OS
- Service / Application
- Contents
- 다양한 계층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태계 구조를 형성
 - 각 계층은 아래 계층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며,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개방성과 공정성 이슈 존재)
 - 수직적 가치사슬이 아닌 생태계적 구조, 한 기업이 여러 영역의 사업을 전개하더라도
 각 시장에서 수평적으로 경쟁해야함 (지배력 전이 이슈 존재)
 - 기업들은 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음

플랫폼의 공정성 문제

- 공정성 논의의 기준
 - 이용자 권리(이용자 선택권 및 소비자 후생)
 - 공정경쟁
- 플랫폼의 성격과 계층에 따라 요구되는 개방성과 중립성, 공정성의 수준은
 다를 수 있음
 - 물리적인 Network와 같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역이나 해당 플랫폼을
 회피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개방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함
 - 반면,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해당 플랫폼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다수 있거나, 회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할 경우에는 개방성과 중립성의 중요도는 낮을 수 밖에 없음

플랫폼의 공정성 문제

법적 규제 또는 책무 부과가 필요한 경우와 기업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적절한 의무부과를 통해 플랫폼의 개방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반면, 개방성은 서비스(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다. 이 경우,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장에서 이용자의 선택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지 개방성을 강요할 수 없음

발표 사례에 대한 검토

- 단말기 제조사와 OS사업자의 앱선탑재 행위
 - 앱의 선탑재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배제되어 있고, 단말 또는 OS의 지배력이
 앱 서비스 시장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선탑재 금지 및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 앱스토어 사업자가 특정앱을 배제하는 행위
 - 특정 OS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앱스토어의 경우, 특정 앱을 배제하는 행위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
 - 그러나 중국과 같이 모든 앱스토어가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환경이거나 하위 사업
 자의 경우, 시장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발표 사례에 대한 검토

- 오픈마켓 사업자가 광고상품을 상위 노출하는 행위
 - 오픈마켓은 진출입이 자유롭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므로, 판매자 역시 판매할 대상과 서비스, 광고상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장 경쟁을 통한해결이 바람직
 - 판매자와 오픈마켓의 거래관계 상의 불공정성 문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의 원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인터넷검색서비스에서 검색결과 제한 또는 자사 서비스 노출 행위
 - 검색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검색결과 노출은 거래관계에 따른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검색결과의 품질의 문제이므로 시장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문제임
 - 다만, 검색광고와 같이 구체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정거래의 원칙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사후 규제 신설의 필요성 검토

- 현행 법령의 합리적 운용이 우선
 - 이미 인터넷서비스 일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의 권리', 민법상 일반원칙(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기존 법에 따라 감독, 규제되고 있음.
 - 음원, 웹툰, 게임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고 주무부처가 따로 있어 사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중복 규제가 우려됨(현재 문화부, 미래부 및 방통위 까지 동 분야에 관할을 주장하며 규제가 확장되고 있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
 - 이용자 후생을 감안하거나, 일반적인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또한 이미 공정거 래법의 규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이용약관 역시 공정위의 표준 약관을 참조하는 방식의 사전 규제와 약관규제법의 사후 규제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임.

사후 규제 신설의 필요성 검토

- 사후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허가산업이거나 단말, OS와 같이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 피해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후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ex.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개정).
 - 이 경우에도, 시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신중히 검토해야함(네거티브 규제).
 -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법적인 정의나 규제 근거가 미약하고 해외사례나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상황임
 - 또한, 신설 규제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될 경우, 규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수적임(불균형 규제 해소).

감사합니다

soulmate@kinternet.org